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635
----------	------

2021년 9월 8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8월 11일, 최기찬 의원
2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3. 상정일자
 - 제30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
(2021년 9월 8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최기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화장실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
마. 불법촬영 신고체계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.

바.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1년 8월 11일 최기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635호로 발의되어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최근 서울의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¹⁾하는 등 학교현장을 비롯한 교육청 산하 기관 내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

[표-1] 2015~2018년 학교 내 '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' 발생 현황²⁾

(단위 : 건)

구분	계	서울	경기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2015	77	18	21	3	2	6	1	-	7	2	-	2	3	1	4	4	3
2016	86	7	25	5	19	6	2	3	-	6	2	5		1	3	1	1
2017	115	19	37	7	5	6	4	1	3	8	6	7	2	1	4	5	-
2018	173	29	53	7	5	8	5	10	8	8	9	6	9	4	5	7	-
계	451	73	136	22	31	26	12	14	18	24	17	20	14	7	16	17	4

1) 보도자료 : 교사가 고교 화장실서 116명 불법촬영...서울교육청, 뒤늦게 퇴출(연합뉴스, 2021.7.29.)

2) 박찬대 국회의원 요구자료(2020.7.)

-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 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총 451건으로,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73건의 촬영범죄가 발생하였으며, 전국적으로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촬영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
- 이에 2018년 6월 경찰청·행정안전부·여성가족부·법무부·교육부 등 5개 정부관계부처는 ‘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’을 발표하고 학교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탐지장비 보급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.³⁾
- 그리고 2020년 7월 교육부는 동 대책으로 보급된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전국 학교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긴급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.⁴⁾

[표-2] 교육부 불법촬영 카메라 긴급 전수점검 결과(서울시교육청)

점검 일자	학교급	점검 학교 수	불법촬영 카메라	탐지장비 보유 수
'20.7.20.~8.21.	초·중·고·특수·각종	1,352	없음	60대 (교육지원청 47대, 학교 13대)

- 이러한 면에서 동 조례안은 학교현장을 비롯한 교육청 산하 기관 내 불법촬영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,

이는 학생 및 교직원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3) 보도자료 : 불법촬영 근절에 수단·자원 총동원…공중화장실 상시 점검(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2018.6.15.)

4) 보도자료 : ‘교내 불법 촬영물 막아라’…교육부, 전국 초중고 긴급 전수점검(경향신문, 2020.7.14.)

나.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

1) 조례안의 체계

-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, 정의, 적용범위,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4조)을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점검계획의 수립(안 제5조), 전문 인력 확충(안 제6조), 신고체계 마련(안 제7조), 실태조사(안 제8조),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 등을 규정하여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, 내용 등에 있어서 「자치법규 입법실무」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2)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계획의 수립에 대한 검토(안 제4조)

- 안 제4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면서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, 불법촬영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[표-3] 서울시교육청 불법촬영 상시 점검 체계

- (점검주기) 연 2회 이상 점검
- (학교) 학교별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점검

<점검 방식 예시>

- ☞ 장비: 지원청 및 유관기관(경찰서, 행정구청 등)에서 대여
- ☞ 인력: 학교 자체 인력 및 유관기관(자치구, 경찰서 등)에 협조 요청
- ☞ 용역: 전문기관에 별도 의뢰(학교 용역계약으로 추진)하여 점검
- ※ 학교예산에 소요경비 편성

- (교육청) 표본학교 선정 및 불시점검
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1월 ‘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’을 수립하면서 ‘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’을 주요 추진과제로 천명하고 학교별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.

[표-4]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추진과제

핵심과제	주요 추진과제
I.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적극적인 성평등 교육정책 추진 ② 교육공동체 성인지 교육 활성화 ③ 교원 성인지력 향상 및 학교 성평등 교육 강화
II. 평등과 존중 기반의 성교육 내실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학교 성교육 내실화 지원 ② 학교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③ 성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
III. 성차별·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활성화 ② 성폭력 신고체계 확충 및 기능 강화 ③ 스쿨미투 발생학교 공동체 회복교육 운영 ④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

[표-5] 서울시교육청 불법촬영 불시점검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점검기간 : 2021. 6. ~ 9. - 점검대상 : 35교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33교 [11개 교육지원청 * 3교(초·중·고 각 1교)] + 2교 (특수·각종 각 1교) - 학교선정 : 교육지원청(학교통합지원센터)과 협의하여 선정 - 점검범위 : 학교 내 화장실, 탈의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가능성 높은 장소 - 점검방법 : 전문 점검업체에 의뢰(용역)하여 실시
--

- 아울러 학생 및 교직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촬영의 사전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‘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불

시점검 추진계획' 을 수립·시행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 2021년 5월 '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' 에 불법카메라 점검 방법을 수록하여 학교 및 교육청 산하 기관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.
- 안 제4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법촬영 예방·대응 및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.

3)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(안 제9조)

- 안 제9조는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및 확인·점검을 위하여 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'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' 에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,⁵⁾

현재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서울시,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⁶⁾

[표-6] 서울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

- 점검기간 : 2021. 8. 16. ~ 9. 30.
- 점검대상 : 1,360교(관내 초 604교, 중 388교, 고 320교, 특수 32교, 각종 16교)
- 점 검 반 : 교육청 점검인원 120명, 서울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250명, 성폭력담당 경찰관 31명

5) ① 유관기관*에 점검 장비, 인력 등 점검 지원 및 점검 활동 협업 요청

* 유관기관 : 서울시 및 자치구(25),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서(31)

② 서울시 교육협력사업으로 제안 : 학교 내 화장실, 탈의실 등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 구축

6) 보도자료 : 서울시·교육청·경찰청,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위해 1360개교 합동점검(뉴시스, 2021.8.5.)

- 안 제9조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화장실 불법촬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2601, 2021.8.19.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화장실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불법촬영”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행위를 말한다.
2. “불법촬영기기”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“기관”이라 한다)에 설치되어 학생,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2.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·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불법촬영 점검 등) ①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계획(이하 “점검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
2.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
3.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·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
4.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충 방안
5.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교육감은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·배포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(전문인력 확충) ① 교육감은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신고체계의 마련)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

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8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의 구축) 교육감은 화장실 불법촬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·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